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**대한병원협회**

수 신 전국 병원(의료원)장

참 조

제 목 **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**

1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-5076(2015.7.9.)

2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고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「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」을 '15.7.9.자로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가. 주요내용

메폴리주맙 등 16개 성분과 자가혈액유래수지상세포 1개 성분을 각각 희귀의약품 또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하고, 이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리포좀시타라빈 등 3개 성분의 대상질환을 추가함

나. 시행일자 : 2015.7.9(목)<개정 고시일과 동일>

붙임 1.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.

2.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전문 1부. 끝.

대한병원협회장



대리 김수한 팀장 정윤학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5-320 (2015.07.16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4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kimsh@kha.or.kr